발간등록번호 31-9735042-0001402-14

NARS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10호 2016. 10. 10.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및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10호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및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의 입법영향분석

원시연(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2016. 10. 10.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입법영향분석보고서**는
국회에서 제·개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주요 법률의 입법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로
수시 발간되고 있습니다.

NARS

동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제 선정 | 2016. 2. 18. |
| 초고 작성기간 | 2016. 3. 2. ~ 2016. 8. 27. |
| 초고작성 경과 | 2016. 2 ~ 2016. 7<br>- 총 9차에 걸쳐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영향분석 회의 개최<br>- 보고서 작성 현황 보고 |
| 초고 검토 | 보건복지여성팀 이만우 팀장 |
| 실무위원회 검토 | 2016년 9월 6일(화)<br>- 위원장: 정성희 사회문화조사실장<br>- 위 원: 김준, 김유향, 유의정, 이만우 팀장 |
| 외부전문가 자문 | 2016년 7월 4일(월) 14시(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br>- 입법영향분석 세미나 발표·토론으로 자문 대체<br>- 정성희 사회문화조사실장 (사회)<br>- 원시연 입법조사관 (발표)<br>- 오민우 실장(부산테크노파크 시험인증실) (지정토론) |
| 간행물 심의위원회 의결 | 2016년 9월 30일(목) 16시<br>- 위원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br>- 위 원: 송대호 경제사회조사실장<br>정성희 사회문화조사실장<br>박재유 기획관리관<br>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심의관 |

# 요 약

□ 이 보고서는 2007년 6월부터 시행된「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와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의 입법영향을 분석할 목적으로, 고령친화용품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총 7개 항목을 분석함

○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보다는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진흥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 관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 왔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법률 제정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 첫째,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산업표준화법」제2조에 따른 모든 광・공업품과 서비스의 표준화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적용범위와 대상이 모호한 문제가 발견됨

○ 또한, 고령친화제품이 "노인을 위한" 제품으로 정의되다보니, 고령친화제품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인 고령친화산업의 정의와 범주도 명확히 파악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고령친화산업의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상황임을 확인함

□ 둘째,「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2조제4호에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8개 부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법률에 근거를 둔 전담부서나 인력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관련 사업도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았음

○ 현장조사를 통해 만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현재와 같이 복지부에서 복지용구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산업부에서 고령친화산

업을 진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

○ 복지부는 법률의 소관부처임에도 범부처 업무추진의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함

□ 셋째, 이 법률에 근거한 예산과 관련하여, 복지부는 지정센터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전부였으며, 산업부는 별도의 예산 없이 센터를 지정하는 업무만 수행 중인 것으로 드러남

○ 중앙정부의 표준화 예산만 보더라도 부처별 업무수행이 상호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

○ 지자체의 경우, 고령친화제품 홍보체험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인프라 사업을 수행 중이었고, 표준화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자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중앙정부의 국고매칭을 통한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음

□ 넷째, 절대다수의 고령친화용품들은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마련되어 있는 경우라 해도「산업표준화법」등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이 확인됨

○ 다양한 고령친화용품이 시장에 유통 중에 있지만, 고령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면 아직 미흡한 실정임

□ 다섯째, 고령친화용품 업체들은「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상황이었음

○ 업체들은 시장판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복지용구 중심으로 생산품

을 제조하려는 인센티브를 강하게 갖고 있어, 전체 용품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음

□ 여섯째, 고령친화용품 관련 고령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2009년 10월 보건복지부고시 개정(제2009-185호)을 통해 복지용구 6개 품목을 구매방식에서 대여방식으로 변경함

○ 구매하던 품목을 대여하다보니 다른 품목들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고령자의 복리는 증진되었으나, 해당 제품 생산업체들 상당수를 도산시키거나,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R&D 예산이 축소되는 부정적인 영향도 초래되었음을 확인함

□ 일곱째, 이미 시험성적서 발급과 심의를 거쳐 표준화 절차를 밟은 제품들을 대상으로 다시 우수제품지정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의 진흥보다 오히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중규제로 인식됨

○ 기업체들이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도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었고,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제품 R&D사업이 축소되는 문제 또한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됨

□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입법과제가 제안됨. 첫째, 이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정부조직법」의 부처별 업무분장 규정방식에 따라, 개별 부처의 고령친화산업 관련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각 부처가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컨트롤 타워를 확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는 것임

○ 다만, 현재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대해 보여준 관심의 수준이 매우 미약하고, 개별부처 소관 법률로 전락한 상황이므로, 법률개정을 통해 범부처 합동 사업으로의 운영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제8조의 표준화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산업부 소관법률인「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모든 광공업품의 표준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8조를 전문개정하여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사업은「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는 내용만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 셋째, 현행과 같이 복지부가 고령친화산업 진흥정책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관리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보다는, 고령친화산업이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산업부로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를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성도 있음

□ 넷째,「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12조는 편익보다 비용이 큰 이중규제로 현장에서 비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할 실익이 크지 않은 관계로 폐지하거나, 전문개정을 통해 우수제품 인증제도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산업표준화법」의 우수제품 인증제도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 다섯째,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제8조와 제12조 이외에도, 사실상「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실효성을 확보한 조항은 발견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현행과 같은 진흥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차 례

□ 요약

Ⅰ. 분석대상 입법의 개관 / 1

1. 분석대상 법률 ····· 1
2. 입법 배경 및 이유 ····· 2
3. 심의 경과 ····· 2
4. 입법의 주요 내용 ····· 3

Ⅱ. 입법영향분석 점검표 / 4

1. 법체계적 분석 ····· 4
2. 정치·행정 영향분석 ····· 5
3. 경제·산업 영향분석 ····· 6
4. 사회·문화 영향분석 ····· 8
5. 규제영향분석 ····· 9
6. 부패영향분석 ····· 10
7. 기타 영향 분석 ····· 10

Ⅲ.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 11

Ⅳ. 입법영향분석 / 14

가. 고령친화산업의 정의와 유형 ····· 14
나. 고령친화용품과 복지용구 ····· 16

다. 입법영향분석의 범위 ····· 18
1. 법체계적 분석: 불명확한 적용범위 ····· 20
2. 정치·행정 영향분석: 중앙 행정기관에 미치는 영향 ····· 26
3. 경제·산업 영향분석 ····· 33
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친 영향 ····· 33
나. 소비자의 보호에 미친 영향 ····· 42
다. 고령친화산업 발전에의 영향 ····· 48
4. 사회·문화 영향분석: 고령자의 복리 ····· 55
5. 규제영향분석: 우수제품 지정제도 ····· 57
6. 부패영향분석 ····· 65
7. 기타영향분석 ····· 65

Ⅴ. 결론 / 66
1. 요약 ····· 66
2. 입법과제 제언 ····· 70

□ 참고문헌
□ 부록

# 표 차 례

[표 1] 고령친화산업 분류 ····· 16
[표 2] 주요 고령친화용품 사례 ····· 17
[표 3] 고령친화산업별 시장규모 추계 ····· 22
[표 4] 제1차 기본계획 및 보완계획의 고령친화산업 과제와 소관부처 ··· 29
[표 5] 제2차 기본계획의 고령친화산업과제와 소관부처 ····· 30
[표 6] 복지부 및 산자부(지경부) 고령친화산업 관련 재정(2006-2010) ··· 34
[표 7] 복지부 및 산자부(지경부) 고령친화산업 관련 재정(2011-2014) ··· 36
[표 8] 부산테크노파크 표준개발 관련 수탁과제 현황 ····· 37
[표 9] 부산시 사업예산 현황 ····· 40
[표 10] 지자체별 홍보체험관 구축 관련 총사업비 현황 ····· 40
[표 11] 고령친화용품 관련 KS 표준 제·개정 현황 ····· 43
[표 12] 고령친화용품 관련 단체표준 제·개정 현황 ····· 46
[표 13] 고령친화용품 제조업체의 인력규모별 현황 ····· 50
[표 14] 고령친화용품 제조업체의 매출액 현황 ····· 51
[표 15] 고령친화우수제품(S마크) 품목 및 품질기준 ····· 58
[표 16] 복지용구의 공급실적 ····· 60
[표 17] 고령친화우수제품 신청 및 지정 현황 ····· 61

# Ⅰ. 분석대상 입법의 개관

## 1. 분석대상 법률

| |
|---|
| **법률명:**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 **법률 조항번호 및 제목:**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및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 |
|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
| **법률(조항) 시행일:** 2007. 6. 29 |
| **해당 법률 조항:**<br>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 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다.<br>1.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br>2.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br>3.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br>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br>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1항 및 제9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br>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등을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br>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에 대하여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업무를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입법 배경 및 이유

- 이 법률은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노인들의 잠재적 수요에 부응하고, 미성숙단계에 있는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이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됨
- 제8조는 고령친화제품 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요구되는 표준화사업의 추진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규정됨
- 제12조는 우수한 고령친화제품과 사업자를 각각 우수제품과 우수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고령친화제품의 질을 확보하고, 산업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규정됨

## 3. 심의 경과

1. 2006년 12월 28일 제정된「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가. 법안발의

- 정부제출안(2005. 11. 08)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됨(2005. 11. 09)

나.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정부제출안은 ①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안 제4조), ② 고령친화산업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며(안 제5조), 연구개발을 촉진하는(안 제6조) 한편,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안 제7조), ③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안 제9조) 및 사업자단체 설립(안 제10조),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의 지정ㆍ표시제도(안 제12조부터 제15조)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었음

-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내용 중 우수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한 바 있음
  - ■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의 촉진과 관련하여 산업적 연구에 허용되는 지원 수준을 준수하고 최대한 민간지원을 유도하도록 하며, 우수제품 지정 기준을 대통령령 등에서 객관적이고 명백히 규정하여 이 기준이 엄격히 준수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특혜 소지를 예방해야 할 것임
-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제출안 중 다음의 사항을 수정하고, 제26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의결함(2006. 08. 22)
  - ■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서는 고령친화제품등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고령친화사업자단체를 동 법률상 법정단체로 둘 당위성이 적다고 보아 사업자단체 설립규정을 삭제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등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대한 지정취소 및 지원상당액 환수 근거 규정을 마련함

다. 본회의 의결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2006. 11. 30)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원안가결됨

## 4. 입법의 주요 내용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음(제8조)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 등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음(제12조)

# Ⅱ. 입법영향분석 점검표

## 1. 법체계적 분석

| 점검 사항 | 검토 필요성 | 관련 내용 (쪽) |
|---|---|---|
| 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위헌 논란**이 있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다른 법률과 충돌하거나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가? | □ | |
| 이 법률(조항)에 **법률 내부적으로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국제법(조약·협정 등 포함)과 충돌하거나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가? | □ | |
| 이 법률(조항)에 지나치게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불명확한 요소**가 있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의 **법문에 애매모호하거나 집행자·수범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는가? | ■ | 20 |

## 2. 정치 · 행정 영향분석

| 점검 사항 | 검토 필요성 | 관련 내용 (쪽) |
|---|---|---|
| 이 법률(조항)이 **헌법기관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국회의 기능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정당이나 정치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선거와 선거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사법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형사제도·형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인권수준과 관련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국적제도와 출입국관리**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남북관계·통일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국방,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정부조직·행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26 |
| 이 법률(조항)이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재난·재해 등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치안 및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3. 경제 · 산업 영향분석

| 점검 사항 | 검토 필요성 | 관련 내용 (쪽) |
|---|---|---|
| 이 법률(조항)이 **조세 및 기타 공과금**(세금, 부담금, 사회보험금 그 밖의 공과금의 인상 또는 인하)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33 |
| 이 법률(조항)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경쟁력**(무역, 투자흐름, 산업입지로서의 장단점, 특정 상품의 국내외 시장에서의 기회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우리나라의 **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국내적으로 **소득 계층간의 부의 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금융·외환**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공정거래**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소비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42 |
| 이 법률(조항)이 **에너지·자원의 수급과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사이의 경제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지역간(특히 도시/농어촌, 수도권/비수도권 사이의) 경제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점검 사항 | 검토 필요성 | 관련 내용 (쪽) |
|---|---|---|
| 이 법률(조항)이 특정한 **산업(기업)**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가? | ■ | 48 |
| 이 법률(조항)이 **농산어촌이나 농림축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국토계획·도시개발**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토지·주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교통(육상, 항공, 해운) 및 관련 사회간접자본**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지하경제(shadow economy)**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후속 세대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는가? | □ | |

## 4. 사회 · 문화 영향분석

| 점검 사항 | 검토 필요성 | 관련 내용 (쪽) |
|---|---|---|
| 이 법률(조항)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문화에 대한 접근, 향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체육·관광, 국민의 여가생활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국민의 건강(질병, 보건의료제도, 보건의료자원의 수급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사회안전망 및 사회보장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아동·청년·고령자·장애인**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55 |
| 이 법률(조항)이 위에서 언급한 사회집단 이외에 **특정 집단 또는 계층(특히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식품·의약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사회적 불평등(차별)**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사적 영역 및 가족생활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과학·기술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점검 사항 | 검토 필요성 | 관련 내용 (쪽) |
|---|---|---|
| 이 법률(조항)이 **연구개발(R&D) 활동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미디어환경(신문·방송·통신·뉴미디어)**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개인) 정보보호**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노동권,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고용 등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자연환경과 생태계, 기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생물다양성 보호와 유전자원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5. 규제영향분석

| 점검사항 | 검토 필요성 | 관련 내용 (쪽) |
|---|---|---|
| 이 법률(조항)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
| 이 법률(조항)에 의해 신설·강화된 **규제의 비용이 규제의 편익을 초과하는가**? | ■ | 57 |
| 이 법률(조항)에 의한 **규제나 편익이 특정한 집단에 과도하게 편중**되는가? | □ | |

## 6. 부패영향분석

| 점검사항 | 검토 필요성 | 관련 내용 (쪽) |
|---|---|---|
| 이 법률(조항)의 **집행기준(재량규정, 위임위탁기준, 재정지원) 등에 적정성**이 결여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가? | □ | |
| 이 법률(조항)으로 규정한 **행정절차의 투명성(접근성, 공개성, 예측 가능성)**이 결여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가? | □ | |

## 7. 기타 영향 분석

| 점검사항 | 검토 필요성 | 관련 내용 (쪽) |
|---|---|---|
| 이 법률(조항)이 **국민의 의식, 사회적 관습이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이 **집단 사이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 □ | |
| 이 법률(조항)의 영향 가운데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중요한 영향**이 있는가? | □ | |

# III.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 유형 | 명칭 | 의견 수집 일시 및 방법 | 주요 내용 |
|---|---|---|---|
| 중앙 관계 기관 | 보건복지부 | 영상회의 (3.17) 전화면담 | - 요양보험제도과에서 복지용구와 함께 업무를 수행 중임<br>- 법률규정과는 달리 범부처의 참여가 없이, 복지부에서 혼자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행체계의 콘트롤 타워를 만들어 범부처가 참여하도록 강제하지 않고서는 법률규정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임 |
| | 국토교통부 | 자료요청 (2.18) 전화면담 | - 자료요청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었음 |
| | 고용노동부 | | - 관련된 사업운영, 예산, 부서, 인력이 없다고 답변함 |
| | 기획재정부 | | - 관련된 사업운영, 예산, 부서, 인력이 없다고 답변함 |
| | 문화체육관광부 | |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부처의 법률에 근거하여 고령친화여가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 |
| | 미래창조과학부 | |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부처의 법률에 근거하여 고령친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함 |
| | 농림축산식품부 | | - 식품산업정책과에서 「과학기술육성법」에 근거하여 2012년 이후 소화율 향상, 기억력 개선, 면역증진 등 고령친화형 식품 및 가공기술 개발 R&D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아직 산업화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임<br>- 현재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근거한 사업이 아니며, 다만 기술개발을 거쳐 이를 산업화할 경우, 이 법률에 근거를 두게 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함 |
| | 산업통상자원부 | | - 바이오나노과에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재)부산테크노파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하는 업무만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며, 관련 예산은 없음 |

| 유형 | 명칭 | 의견 수집 일시 및 방법 | 주요 내용 |
|---|---|---|---|
| 지자체 |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 현장조사 (5.12-13) | - 부산시 차원에서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음<br>-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매칭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확보하고 싶지만, 산업부는 복지부 소관법률이라고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고, 복지부는 예산이 없어서 지자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 |
| 업무추진기관 | 부산테크노파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전문가 간담회 (3.28.) 현장조사 (5.12-13) |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센터<br>- 현행 고령친화산업 중 용품과 의료기기를 제외하고, 특정 육성기반이라든지 부처에서 담당하는 사업의 개념은 없음<br>- 식품과 화장품은 고령친화산업이 통계가 있고 분류가 나와야 표준화 작업이 들어오는데. 품목분류도 안되어 있음<br>- 고령사회기본계획 등을 세울 때, 고령친화산업을 결국 민간의 참여와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려 한다면, 현행과 같은 실적목표는 개선이 필요함 |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현장조사 (1.14) | - 보건복지부 지정센터<br>- 고령친화산업 R&D를 위한 연구코드 분류작업 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br>-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사실상 이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규격이 없고, 고령자를 배려했다는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기준의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음<br>- 국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고령친화산업의 틀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임 |

| 유형 | 명칭 | 의견 수집 일시 및 방법 | 주요 내용 |
|---|---|---|---|
| 이해관계자 |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 전화면담 (3.16) 현장조사 (4.7) | -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한 제대로 된 산업분류도 존재하지 않고, 우수제품지정과 관련하여 제도의 취지와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복지용구업체들의 참여절차로 전락해 버린 상황임<br>- 현재와 같이 복지부에서 수행하는 것은 표준화나 지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업무추진과정에서 한계가 드러날 수 있어, 산업부의 역할 강화가 요구됨 |
| 이해관계자 | 고령친화용품업체 | 부산시 현장조사 (5.12-13) | - 우수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복지용구품목에 새롭게 진입하려면, 업체입장에서는 200개 이상의 샘플을 만들어 두어야 하는데, 만약 건강보험공단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되지 못할 경우 최악의 경우는 제품들을 모두 폐기처분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음<br>- 업체들이 새롭게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특정 기능을 첨가한 샘플을 만들 경우, 최소한으로 제조하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하라고 해야, 업체들이 수 천 만원의 비용을 결과도 모른 채 투자하는 낭비를 하지 않으며, 시장진입에 실패했을 경우겪게 되는 사업체의 존폐문제가 시정될 수 있을 것임<br>- 현행과 같은 추진과정에서는 업체들이 제품개발을 위한 R&D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움<br>- 용품과 관련하여 일본과 대만의 기술력이나 중국제품의 가격경쟁력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산제품들이 설 곳을 잃어가고 있음 |

# Ⅳ. 입법영향분석

## 가. 고령친화산업의 정의와 유형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제2호에 의하면, 고령친화산업의 법률적 정의는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함

□ 여기에서 고령친화제품 등이란「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일컬음

○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 노인요양 서비스

○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 노인을 위한 의약품・화장품

○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

□ 제품과 서비스의 주요 대상자와 공급의 주체 및 방식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정의해 본다면, '편리성과 안전성에 있어서 노인의 선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경제에 근거하여 생산・공급하는 산업'으로 볼 수 있음

□ 2005년 이후 정부에서 발간되어 온 고령친화산업 관련 보고서[1] 등을 살펴보면, 고령친화산업의 범위와 내용은 정책입안자나 연구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분류되었고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음

○ 각종 문헌조사를 통한 고령친화산업 관련 분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해외사례나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제시된 수준에 머물러 있음[2]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법령, 해외사례, 정부문서, 선행 연구, 산업통계 구비 여부,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거쳐, 2011년에는 [표 1]과 같이 9개 부문을 고령친화산업으로 분류한 바 있음

1) 2005년 2월,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이하 미래사회위원회)는「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에서 8대 산업(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을 제시하였음. 2005년 5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 기존의 미래사회위원회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격상된 후, 2006년에 발간된「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II)」에서 고령친화산업에 6대 산업(교통, 식품, 의약품, 장묘, 의류, 교육)을 추가로 제시함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2011, p. 119.

[표 1] 고령친화산업 분류

| 구분 | 부문 | 대분류 |
|---|---|---|
| 제품 | 의약품 | 신경계용약, 대사성의약품, 순환계용약, 해열진통소염제, 안과용제, 전립선치료제, 종양치료제 |
| | 식품 | 식품, 건강기능식품 |
| | 화장품 | 기초제품, 색조제품, 바디제품, 헤어케어 |
| | 의료기기 | 치과, 재활, 진단, 치료분야 |
| | 용품 | 개인건강, 의료용품, 기능저하예방용품, 이동기기, 목욕용품, 배변용품, 침구용품, 가사용품, 주거설비용품, 정보통신기기, 여가용품 |
| 서비스 | 요양 | 시설요양서비스, 재가요양서비스, 예방지원서비스 |
| | 금융 | 장수, 건강, 재무리스크 |
| | 주거 | 주택개보수, 고령자 주택공급 |
| | 여가 | 스포츠, 문화, 관광/레저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2011, p.127-8.

## 나. 고령친화용품과 복지용구

□ 향후 영향분석 부분에서 다루게 될 고령친화용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고시한 복지용구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자 함

### (1) 고령친화용품

□ 고령친화용품이란 고령자의 생물학적 노화와 신체적 능력 저하를 고려하여 일상생활 유지 및 사회활동 편의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을 일컬음

○ 반드시 사용허가가 필요한 의료기기, 현저한 심신기능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재활보조기구와 차별화되지만 일부는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표 2] 참고)

[표 2] 주요 고령친화용품 사례

| 분류 | 주요 품목 |
|---|---|
| 개인건강·의료용품 | 건강측정용품, 온열용품, 안마기, 한방기기, 고령자용 신발·의류 |
| 기능저하 예방용품 | 고령자용화장품, 운동기기, 기능훈련용품, 근력·운동기능 측정용품 |
| 이동기기 | 목욕차량, 휠체어, 리프트, 보행보조기, 지팡이, 복지차량 |
| 목욕용품 | 이동형 욕조, 자동목욕기계, 목욕의자, 목욕리프트 |
| 배변용품 | 이동변기, 간이변기, 침대용 변기, 기저귀 용품 |
| 침구용품 | 침대, 매트리스, 침대용 리프트 |
| 주거설비용품 | 기능성 가구, 미끄럼방지용품, 건축물용 안전장치 |
| 정보통신기기 | 보청기, 독거노인모니터링시스템, 치매팔찌, U-헬스케어 |
| 여가용품 | 고령자용 게임기 |

자료: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10.10.15),「고령친화용품 제조 중소기업 육성 방안」, p. 1 에서 재구성.

###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복지용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임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요양등급(1등급~5등급) 인정을 받은 자가 대상이 됨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종류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복지용구를 1년에 160만원 한도에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음

○ 복지용구의 본인부담금은 전체 가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일반노

인 15%, 저소득층 7.5%,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일반 고령친화용품과 비교할 때 제품의 판매가 훨씬 용이하고, 별도의 홍보나 광고 없이도 노인요양보험제도에 의해 판로가 보장되어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는 다음과 같이 17개 품목이며, 고령친화용품에 해당됨

| | |
|---|---|
| 1. 이동변기 | 10. 수동휠체어 |
| 2. 목욕의자 | 11. 전동침대 |
| 3. 성인용보행기 | 12. 수동침대 |
| 4. 안전손잡이 | 13. 욕창예방매트리스 |
| 5. 미끄럼방지용품 | 14. 이동욕조 |
| 6. 간이변기 | 15. 목욕리프트 |
| 7. 지팡이 | 16. 배회감지기 |
| 8. 욕창예방방석 | 17. 경사로 |
| 9. 자세변환용구 | |

자료: 보건복지부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016-108호

## 다. 입법영향분석의 범위

□ 이 보고서의 목적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와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의 입법영향을 분석하는 것임

○ 총 16개의 조항 중 제8조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 사업이 이 법률의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제7조(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및 제11조(금융지원 등)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고령친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필수적 절차가 되기 때문임

○ 또한 제12조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우수제품지정 사업이 제13조(우수제품 등의 지정취소), 제14조(우수제품 등의 표시 금지), 제15조(우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및 환수)에 선행되어 수행되고 있고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임

□ 그런데 고령친화제품 관련 표준화와 지정현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3] [표 1]에서 살펴본 9개 산업 중 고령친화용품 분야 정도에만 적용되고 있는 상황임

○ 이 법률 소관부처인 복지부에 확인해 본 결과,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의 제품과 관련한 우수제품지정(S마크) 업무는 아직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요양보험제도과에서 복지용구와 일부 용품 위주로 우수제품지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이 법률이 시행된 2007년 6월부터 2015년까지의 표준화 사업과 우수제품 지정・표시사업의 입법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용품 분야로 분석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함

3)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3절 경제・산업영향분석 중 소비자보호 부문(pp.42~48)과 제5절 규제영향분석 부문(pp.58~65)을 참조

## 1. 법체계적 분석: 불명확한 적용범위

### (1) 「산업표준화법」과의 관계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산업표준화법」 제2조에 따른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산업표준화법」 제2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광공업품인 고령친화제품은 모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표준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고령친화제품의 범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음

「산업표준화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표준"이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2. "산업표준화"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공업품의 종류·형상·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성능·기능·내구도·안전도
나. 광공업품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製圖方法)·사용방법·운용방법·원단위(原單位)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안전조건
다.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성능·등급·방법
라.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의 기술과 관련되는 시험·분석·감정·검사·검정·통계적 기법·측정방법 및 용어·약어·기호·부호·표준수(標準數)·단위
마. 구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계·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바.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설계·생산·운용·보수·폐기 등을 관리하는 정보체계 및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
사.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전기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절차·방법·체계·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 |
|---|
| 3. "품질경영"이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계획・관리・보증・개선하는 등의 경영활동을 말한다. |

□ 사실상 모든 광공업품과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 등이「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화사업의 대상이기 때문에「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8조제1항에 따른 표준화사업의 범위는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조항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2) 고령친화산업 구분의 모호성

□ 「산업표준화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8조에 따른 입법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고령친화제품의 범위를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함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상의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정의가 모호함에 따라 고령친화제품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고령친화산업의 범위도 불명확해 질 수밖에 없음

□ 단지 "노인을 위한"이라는 표현에 근거하여 고령친화제품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산업을 설명하다보니, 관련 시장의 규모를 추계하는 과정에서도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과장된 측면들이 발견되고 있음

□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를 추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표 3] 참고), 2012년 기준 고령친화산업의 규모가 27조원을 넘어서, 2020년에는 약 73조원에 달하는 등 매년 평균성장률이 13%로 매우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됨

○ 이 수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수치만 두고 보면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이 다른 산업에 비해 두드러진 분야여야 함을 의미함

### [표 3] 고령친화산업별 시장규모 추계

(단위: 억 원, %)

| 부문 | 2012년 | | 2015년 | | 2020년 | | 평균성장률 (12~20) |
|---|---|---|---|---|---|---|---|
| | 시장규모 | 비중 | 시장규모 | 비중 | 시장규모 | 비중 | |
| 의약품 | 37,791 | 13.8 | 54,010 | 13.8 | 97,937 | 13.4 | 12.6 |
| 식품 | 64,016 | 23.4 | 93,609 | 23.8 | 186,343 | 24.2 | 13.5 |
| 화장품 | 6,945 | 2.5 | 10,645 | 2.7 | 21,690 | 3.0 | 15.3 |
| 의료기기 | 12,438 | 4.5 | 17,827 | 4.5 | 32,479 | 4.5 | 12.8 |
| 용품 | 16,689 | 6.1 | 18,770 | 4.8 | 22,907 | 3.1 | 4.0 |
| 요양 | 29,349 | 10.7 | 46,533 | 11.9 | 100,316 | 13.8 | 16.6 |
| 주거 | 13,546 | 5.0 | 14,209 | 3.6 | 14,301 | 2.0 | 0.7 |
| 여가 | 93,034 | 34.0 | 137,237 | 34.9 | 262,331 | 36.0 | 13.8 |
| 합계 | 273,809 | 100.0 | 392,839 | 100.0 | 728,305 | 100.0 | 13.0 |

주: 금융산업은 당해년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누적, 거치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은퇴자산으로 접근하며, 시장규모 추계에서는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 시장동향」, 『고령친화산업 REPORT』, 2015.

□ 그러나 실제 고령친화산업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과는 달리 두드러진 성장이 목격되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시장규모의 추계방식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우선, 시장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가산업(2015년 기준, 13조 7,237억원)과 관련하여, TV · 영화 · 음악 등의 문화산업, 여행 및 레저 등 관광산업, 스포츠 산업, 게임 등을 포함한 기타 서비스 산업의 전체 시장규모에 노인인구비율과 이용비율을 곱한 결과를 고령친화 여가산업이라고 추계하고 있음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문화, 관광, 스포츠 등 여가 프로그램들을 성인인 노인들도 함께 소비하고 향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노인을 위한" 고령친화 여가산업 시장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둘째, 고령친화 식품산업의 시장규모추계와 관련하여, 소화능력이 취약한 노인들을 위한 특수제조 · 가공식품이나 노인전용 건강기능식품 등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된장 · 간장 등 전통발효식품과 두부류 또는 묵류 등의 일반식품들까지 "노인을 위한" 고령친화식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시장규모(2015년 기준, 9조 3,609억 원)를 추계하는 것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노인용 건강기능식품"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한 것임

○ 해외의 식품산업 분류체계를 보더라도, 영 · 유아식 외에는 연령에 따른 식품 구분을 두지 않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특수용도식품을 고령친화식품에 포함시키는 일본사례 등이 있을 뿐, 일반식품을 모두 고령친화식품범주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음

□ 셋째,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의 시장규모와 관련해서도, 중 · 장년 이후 발병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성인병 치료제 시장을 고령친화 의약품 시장으로 추계하기보다는, 다양한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노인들이 소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임

○ 해외 사례에서도 의약품산업을 고령친화산업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노인을 위한" 의약품이라는 개념도 사실상 적용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음

□ 넷째, 고령친화 화장품산업의 시장규모의 경우도, 기초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색조화장품, 두발염색제품, 향수 등 방향용제품의 전체 시장규모에 노인인구비율과 이용율을 곱한 것은 노인의 화장품 소비지출 현황은 될 수 있으나 이를 바로 "고령친화" 화장품 시장규모로 추계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다섯째,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의 규모와 관련해서도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과장된 측면이 존재하는 데다, 의료기기와 용품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의료기기시장과 용품시장의 규모 추계 시 상호간 중복이 발생될 소지가 크고 정확한 분석이 어려움

□ 고령친화산업 관계자가 그 규모를 과장하도록 만드는 이유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거대산업 중심 지원전략에서도 발견할 수 있음

○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자 면담 과정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고령친화제품 관계자들은 산업부에 지속적으로 국가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해 왔으나, 산업부는 현행의 고령친화산업처럼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영세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은 재정상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해 왔기 때문임

○ 따라서 노인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꼭 노인이 아니라도 일반 성인이면 모두 구매와 이용이 가능한 것이지만, "노인을 위한" 이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근거로 모두 고령친화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과장하는 경향이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됨

### (3) 소결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르면, 사실상 「산업표준화법」 이 고령친화제품 표준화사업의 근거법률이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대상은 발견하기 어려움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고령친화제품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것이 고령친화산업인데, 고령친화제품이 "노인을 위한" 제품이라는 불명확한 정의에 근거하고 있어, 진흥하려는 고령친화산업의 실체도 제대로 파악되기 어려움

□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노인을 위한" 산업의 규모를 파악해 본 결과, 모든 일반 산업에 "고령친화"라는 명칭을 붙이고, 노인인구비율을 곱하여 고령친화산업의 규모를 추계하고 있었음

○ 이는 고령친화산업의 실체 파악에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을 통해 진흥시켜야 할 고령친화산업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될 수 있음

□ 고령친화제품과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정의부터 불명확하고, "노인을 위한" 광공업품의 표준화사업도 「산업표준화법」 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인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는 법률 규정으로서의 역할이 모호한 상황임

## 2. 정치・행정 영향분석: 중앙 행정기관에 미치는 영향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제1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이 조항에 근거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이 조항이 중앙 행정기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우선, 이 법 제2조제4호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임

○ 제정당시 법률안은 정부안이었고,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된 부처들은 업무관련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사료되나, 실제 법률안 작성에는 산업부와 복지부만 참여하였고,[4] 고령친화산업 육성과제가 명시된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5]에도 산업부와 복지부만 담당부처로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함

### (1) 보건복지부

□ 복지부는「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소관부처로서, 이 법률의 제정 시점(2006년)에 맞추어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신설한 후 산하에 고령친화산업팀을 설치하였음

4) 대한민국정부,「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2005, p. 335.
5) 이하 [표 4]와 [표 5] 참고

○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으로 개편되고, 고령친화산업(팀)과가 폐지되면서 해당 업무는 고령사회정책과로 이관됨

- 이는「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담당부서가 동력을 상실하고, 업무도 축소된 것을 시사함

○ 2013년 2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이 인구정책실로 개편되고, 고령사회정책과가 폐지되면서, 관련 업무는 요양보험제도과로 이전됨

- 현재 요양보험제도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복지용구 업무담당자 1인이 고령친화산업 업무를 겸직하여 담당 중임

○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후, 지원센터에서 고령친화제품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업무 등을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지원센터의 업무범위도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등에 단체표준 제・개정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함

### (2) 산업통상자원부

□ 현 산업부의 전신인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도 2006년 미래생활산업본부 산하에 디지털융합산업팀을 신설하고, 고령친화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함

○ 2008년 2월, 지식경제부로 부처명이 변경되고 직제가 개편되면서, 미래생활산업본부 산하의 산업융합정책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됨

○ 산자부(지경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고령친화산업을 신산업동력으로 육성하려던 정책적 의지가 있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부처의 내부 산업추진체계는 관련 예산과 인력도 없이 동력을 상실하게 됨

○ 2011년 1월, 산업융합정책과가 폐지되면서, 바이오헬스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고령친화산업이 헬스산업의 일환으로 분류되면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은 없어지고, 헬스산업 담당자가 겸직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함

○ 2013년 3월, 바이오헬스과에서 바이오나노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고령친화산업은 바이오산업과 나노산업 중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지정)에 따라, 관련 예산도 없이 (재)부산테크노파크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이하 부산테크노파크)를 2년에 한 번씩 지정하는 업무만을 수행 중임

○ 현행 산업부의 표준화사업은 「산업표준화법」 에 따라 추진할 뿐,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라 고령친화제품에 별도로 표준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법률의 소관부처도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고령친화산업 관련 업무가 복지부와 산업부(지경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음은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음([표 4] 참고)

[표 4] 제1차 기본계획 및 보완계획의 고령친화산업 과제와 소관부처

| 제1차 기본계획 | | 제1차 보완판 | |
|---|---|---|---|
| 과제명 | 소관부처 | 과제명 | 소관부처 |
| 고령친화산업 육성 제도적 기반마련 | 복지부/산자부 |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기반 강화 | 복지부/지경부 |
| 우수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지정표시제도 도입 | 산자부 | 우수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지정 표시제도 도입 | 복지부 |
|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 산자부 |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 지경부 |
| | |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 지경부 |

주: 지경부는 지식경제부의 약자로서, 산업자원부의 명칭이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라 지식경제부로 변경된 것임

자료: 대한민국정부,「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5; 대한민국정부,「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완판」, 2008 중 재구성.

□ 제1차 기본계획 및 보완계획([표 4] 참고)에서는 산자부(또는 지경부)의 역할이 많이 드러나고 있으나, 제2차 기본계획([표 5] 참고)에서는 복지부의 역할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줌

○ 2005년 초 미래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2005. 1. 21)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고령친화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에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산자부가 제1차 기본계획 작성과정에 이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주도하였기 때문임

○ 2005년 9월, 산자부는 고령친화산업발전 5대 전략 및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5년간 2,45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임을 발표함[6)]

6) 산자부 보도자료(2005. 9. 15),「고령친화 생활체험 서비스 실시,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표 5] 제2차 기본계획의 고령친화산업과제와 소관부처

| 제2차 기본계획 과제명 | 소관부처 |
|---|---|
|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 복지부 |
|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 지경부 |
|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 표시제도 확대 | 복지부 |
| 국내 수요기반(홍보관, 종합체험관, 전시관 등) 확충 | 복지부/지경부 |
| 고령친화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복지부 |
|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준 및 규격신설과 신규시장 창출 | 복지부 |

자료: 대한민국정부,「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0.

○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접어들어 고령친화산업이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산업 범위[7]에서 제외되자 산업부의 적극성은 약화됨

- 다만, 표준화 사업은 산업부의「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제1차 기본계획 시기에 마련해 둔 인프라 확충 및 운영비 지원에 따라 종합체험관 운영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것임

○ 한편, 제2차 기본계획에서 복지부가 표준화사업의 소관부처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가「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8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시사함

○ 문제는 복지부가 법률의 소관부처 자격으로 관련 사업을 주도하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이윤과 경제성을 강조하는 "산업 마인드"로 수행되어야 할

7) 2008년 9월 22일, 대통령 주재 신성장동력보고회에서 신성장동력기획단 및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6대 분야(에너지・환경, 수송시스템, 뉴 IT,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와 22개 세부 산업기술(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신약,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여 발표함. 지경부 보도자료(2008.9.22),「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발표」.

산업제품의 기술개발과 표준화, 해외시장 선점과 개발, 산업의 기준 및 규격 신설과 신규시장의 창출 등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담당하기에는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임[8)]

○ 결국 복지부는 고령친화용품 중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복지용구를 중심으로 제12조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업무 정도만 추진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보여주고 있음

### (4) 소결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항에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법률에 따라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고령친화산업이 정부의 성장동력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복지부와 산업부의 담당부서가 폐지되거나 개편되고 전담인력이 따로 없이 겸무로 수행 중이며, 특히 산업부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감소되었음

○ 이는 부처의 조직개편의 내용과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업무추진 내용을 통해 확인됨

□ 심지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소관부처인 복지부도 고령친화산업팀(과)가 2009년에 폐지된 이후, 해당 업무는 축소되어 다른 업무와 겸직하여 추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8)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전문가 간담회,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운영실태와 법적 개선과제」(2016. 3. 2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관계자 면담(2016. 1. 14)

□ 조사결과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은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사업과 우수제품 지정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설령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함[9)]

○ 우리나라의 표준화사업은 사실상 산업부 소관법률인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원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어떤 부처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임

○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8조와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임에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관련 규정들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10)]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서, 범 부처가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사업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사업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는 내용만 명확히 담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9) 8개 부처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현황자료를 요청한 결과, 복지부와 산업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처는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일부부처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한 경우도 있었음

10) 참고로 8개 중앙 행정기관 중 제4조(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 따라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지난 9년 동안 한 번도 없었음

## 3. 경제 · 산업 영향분석

### 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친 영향

#### (1) 중앙정부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중앙정부의 사업실적과 운영이 매우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표준화사업과 우수제품지정 사업으로만 재정규모를 한정하지 않고, 복지부와 산자부(지경부)의 고령친화산업 관련 재정지출 내역 전체를 모두 함께 살펴보고자 함

□ 제1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11]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육성과제 관련 복지부 및 산자부(지경부) 예산 전체를 살펴보면 [표 6]과 같음

○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 중 가장 큰 재정이 소요된 사업은 산자부(또는 지경부)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매칭사업으로 설립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또는 홍보체험관 설치 · 운영사업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와 해당 지자체 및 민간 매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산자부(지경부)의 경우 시설설치비로 482억 원의 재정이 소요됨
- 일본은 체험관을 고령친화용품 수요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전국에 120여개를 설치하여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운영 중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4개소(부산, 대구, 광주, 성남)에 불과한 실정임

11)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관련 재정을 분석한 이유는 우선, 기본계획 중 성장동력 분야에 고령친화산업 육성과제가 포함되어 있고, 산자부(지경부)와 복지부가 기본계획에 함께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자부(지경부)가 자부처 고령친화제품 표준화사업을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이기 때문임

[표 6] 복지부 및 산자부(지경부) 고령친화산업 관련 재정(2006~2010)

| 사업명 | 성과지표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고령친화 산업통합 DB 개발 및 구축 (지경부) | 최종예산(억원) | | | | 0.4 | |
| | 예산집행률(%) | | | | 100.0 | |
| 우수제품 품질표시제 내실화 | 최종예산(억원) | 0.2 | 비예산 | 비예산 | 비예산 | 비예산 |
| | 예산집행률(%) | 100.0 | | | | |
| 종합체험관 설립 (지경부, 지자체) | 최종예산(억원) | | 71.6 | 172.1 | 133.5 | 105.0 |
| | 예산집행률(%) | | 100.0 | 100.0 | 100.0 | 100.0 |
| 복지용구 우수제품개발 R&D | 최종예산(억원) | | | | 20 | 24 |
| | 예산집행률(%) | | | | 120.0 | 100.0 |
| 지원센터 기능강화 (복지부) | 최종예산(억원) | | | | 1.3 | 0.1 |
| | 예산집행률(%) | | | | 100.0 | 100.0 |
| 지원센터 기능강화 (지경부) | 최종예산(억원) | 23.9 | 19.6 | 19.9 | 21.6 | 6.0 |
| | 예산집행률(%)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우수제품 전시기회확대 | 최종예산(억원) | 0.4 | 0.4 | 1.1 | 1.4 | 비예산 |
| | 예산집행률(%) | 100.0 | 100.0 | 100.0 | 100.0 | |
| 국내·외 마케팅활성화 | 최종예산(억원) | | | | 1 | 1 |
| | 예산집행률(%) | | | | 100.0 | 100.0 |
| 고령자복지표준 제·개정 추진 | 최종예산(억원) | 0.4 | 0.4 | 0.2 | 0.2 | 1.0 |
| | 예산집행률(%)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2011, p. 184.

○ 그 다음으로는 산자부(지경부)가「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10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지정)에 따라 지정한 부산테크노파크 내에 제품 표준화

테스트베드구축, 시험검사 및 인증을 위한 설비와 장비 설치 등 산업화지원 기반구축사업경비로 제1차 기본계획 기간인 5년 동안 총 91억 원이 소요됨

□ 반면, 제품 표준 제・개정과 관련된 예산은 5년간 총 2억 2천만 원에 그치고 있고,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품질표시 관련 예산은 첫 해에 2천만 원이 배정된 후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됨

○ 지자체와 매칭으로 설치하는 종합체험관 등 시설 인프라만 구축한 채, 사실상 고령친화제품의 질 확보를 위한 표준화 예산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줌

○ R&D예산과 관련해서는 2008년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2009년부터 복지용구 관련 예산이 배정되었고, 고령친화용품 중에서도 복지용구 R&D로만 사업예산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줌

○ 이는 복지용구 이외의 고령친화용품 표준화 R&D 예산 등은 민간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을 시사함

□ 제2차 기본계획 기간인 2011년부터 자료 파악이 가능한 2014년까지의 정부재정 내역을 살펴보면,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운영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표준화 예산도 제1차 기본계획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보여줌([표 7] 참고)

○ 그러나 세부 확인결과「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사업 예산규모는 매년 3억 5천만 원 수준이고,[12] 표준화 예산도 별도의 사업예산이 아니라, 가전제품 개폐장치에의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KS표준 등 부처의 기존 표준화 예산임이 확인됨

12)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제출자료(2016. 6)

[표 7] 복지부 및 산자부(지경부) 고령친화산업 관련 재정(2011~2014)

| 사업명 | 성과지표 | 2011 | 2012 | 2013 | 2014 |
|---|---|---|---|---|---|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운영 (복지부) | 최종예산(억원) | 5 | 5.15 | 8.5 | 8.59 |
| | 예산집행률(%) | 100.0 | 100.0 | 100.0 | 99.3 |
| 고령친화산업 통계생산 구축 및 R&D (복지부) | 최종예산(억원) | | 10 | 10 | 12.8 |
| | 예산집행률(%) | | 100.0 | 100.0 | 85.3 |
|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 최종예산(억원) | 1 | 1 | 1 | 1 |
| | 예산집행률(%)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각 연도.

□ 그리고 산업부 지정센터인 부산테크노파크가 수탁한 업무현황과 예산자료를 보면([표 8] 참고), [표 7]의 사업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제품 안전기술 기반조성사업이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등에서 고령친화제품 표준개발 관련 업무가 수행되고 있음

○ 다시 말해서,「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표준화 사업과 별도로,「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화 사업이 산업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임

[표 8] 부산테크노파크 표준개발 관련 수탁과제 현황

| 구분 | 사업명 | 과제명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사업비 |
|---|---|---|---|---|---|
| 산업부 | 제품안전 기술기반 조성사업 | 장애수준에 따른 고령자용 목욕의자 안전 설계지침 및 안전기술 개발 | 2015. 09.01.~ 2016. 08.31. | 고령자 목욕의자 안전설계지침 및 표준개정 | 3천만원 |
| 산업부 | 국가표준 기술력 향상사업 | 장애인 및 고령친화용 의료기기 표준화 및 시험환경 구축 | 2014. 06.01.~ 2017. 05.31. | 전동휠체어, 자세변환용구 자동배변처리기 3개 품목 국제표준 제안 | 1억3,500 만원 |
| 중기청 | 단체표준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 고령자/장애인 식사용품 단체표준개발 | 2014. 09.01.~ 2015. 08.31 | 고령자/장애인용 숟가락, 포크, 식판 표준개발 | 2억2,300 만원 |
| 산업부 | 국가표준 기술력향상 사업 | 노인/장애인 보조기구 중 세면기 표준개발 | 2011. 07.01.~ 2013. 06.30. | 고령자/장애인용 높낮이조절 세면기 표준개발 | 1억2000 만원 |

자료: 부산테크노파크 제출자료(2016.06.12.)

□ 부산테크노파크가 지경부에 제출한 2010년도 최종보고서[13]를 보더라도, 고령친화용품의 표준화 기반구축 사업이 곧 KS 표준사업임이 명시되어 있고, 관련 예산도 5년간 6억 2천만 원을 상회하고 있음

13) 지식경제부 사업보고서, 「고령친화용품 산업화지원 기반구축 2005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보고서(최종보고서)」, 2010. (부산테크노파크 작성)

○ 이는 산업부가 관련 사업을 소위 “고령친화” 표준사업이 아니라 일반 산업표준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과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가 산업부의 표준화 사업에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줌

○ 부연하면, 산업부는 고령친화용품 관련 표준화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이를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이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가 사문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인데, 관련 사업 예산의 규모도 문제지만, 사업이 부처별로 따로 수행되다보니 범부처가 참여한 기본계획 안에 제대로 담기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부처별 협력체계가 미흡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2)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친화산업 추진내역 등을 살펴보면,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가 고령친화산업을 3단계(2009~2013) 10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음

○ 부산시는 유일하게 “고령친화산업”이라는 명칭을 지속하여 고령친화산업팀을 노인복지과 산하에 두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계획해 왔음[14)]

○ 그러나 부산시가 주도하는 자체사업만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진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에서, 중앙정부와의 매칭사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것으

14) 광주광역시는 2012년 2월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로 확인됨[15)]

- 이에 대해 산업부는「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소관부처가 복지부이고, 부산시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복지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하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현행 고령친화용품산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에는 너무 영세한 산업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지원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임
- 반면, 복지부에는 지자체사업을 매칭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민간업체의 자발적인 개발 및 투자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부산시가「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수행 중인 사업으로는 부산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사업, 고령친화제품 전시・체험 서비스관 및 이동체험관 운영지원 사업,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 운영지원 사업, 부산국제실버엑스포 개최 및 참가지원 사업, 노인복지용구 종합센터 운영 사업 등이 있음

○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은 부산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32억 7,400만원이 소요되었고 2014년부터 5년간 지속되는 4단계 전략산업의 예산은 32억 5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임([표 9] 참고)

○ 고령친화산업을 10대 전략 산업으로 표방하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도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 및 우수제품지정 예산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됨

○ 현재까지 지자체 차원에서는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 사업 정도가 수행 중인 상황임

15) 현장조사 면담결과(2016. 5. 12~13)

### [표 9] 부산시 사업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13년 이전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테크노파크 운영지원 | 3,274 | | 650 | 650 | 650 | 650 | 650 |
| 전시・체험 서비스관 이동체험관 운영지원 | 150 | | 50 | 50 | 50 | 50 | 50 |
| 홍보체험관 운영지원 | 575 | | 200 | 200 | 200 | 200 | 200 |
| 부산국제실버엑스포 개최지원 | 국비 | 0 | 0 | 0 | 100 | 100 | 100 |
| | 시비 | 670 | 150 | 150 | 150 | 150 | 150 |
| | 민자 | 880 | 330 | 330 | 350 | 350 | 350 |
| 부산국제실버엑스포 참가지원 | 120 | | 30 | 30 | 30 | 30 | 30 |
| 노인복지용구 종합센터운영 | 940 | | 275 | 975 | 575 | 575 | 575 |

자료: 부산광역시 제출자료(2016. 4. 7)

□ 현재 홍보체험관이 구축되어 있는 4곳의 지자체는 국비와 매칭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였고, 구축사업기간 동안 인건비를 비롯한 시설운영비까지 합산한 총 사업비 현황은 [표 10]과 같음

### [표 10] 지자체별 홍보체험관 구축 관련 총사업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구축사업기간 | 주관기관 | | 사업비 | | | |
|---|---|---|---|---|---|---|---|
| | | 지자체 | 위탁기관 | 계 | 국비 | 지방비 | 민자 |
| 대구 | 2007.9~2010.8 | 첨복지원과 | 대구보건대 | 106.4 | 50 | 55 | 1.4 |
| 성남 | 2007.9~2012.10 | 기업지원과 | 을지대 | 357 | 50 | 307 | - |
| 광주 | 2008.9~2013.5 | 전략산업과 | 광주과기원 | 179 | 49 | 130 | - |
| 부산 | 2005.9~2010.8 | 노인복지과 | 테크노파크 | 122 | 78 | 20 | 24 |

자료: 대구광역시 제출 회의부록자료(2016. 4. 7)

### (3) 소결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중앙정부 재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정 중 복지부와 산업부의 관련 예산, 그리고 지자체(특히 부산시)의 재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함

○ 우선,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정부 예산이 투입된 분야는 고령친화용품 종합체험관과 같은 시설 인프라 구축 및 시설운영비였고, 그 다음으로는 복지부와 산업부가 지정한 센터의 사업추진 및 운영비였음

○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 예산은 연간 최소 2천만 원부터 최대 1억 원 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상황이었는데, 이는 소관부처인 복지부가 표준화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산자부(지경부) 또는 산업부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일반 광공업품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 기본계획 안에 별도로 포함시킬 표준화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려를 해오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

□ 한편, 지자체의 재정지원도 고령친화용품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전시하는 홍보체험관을 중앙정부와 매칭으로 건립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업체들의 실버엑스포 참여를 독려 및 지원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음

○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와 이를 위한 R&D 예산 등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고령친화산업이 초고령화 사회의 성장동력이 되어줄 산업으로 10년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8조에 따른 표준화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없는 것임

나. 소비자의 보호에 미친 영향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는 고령친화제품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국내・외 "소비자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품질을 향상하고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규정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실제로 고령친화용품 관련 KS표준과 단체표준[16]은 모두 산업부의 「산업표준화법」에 근거를 두고 제・개정되고 있는 데다, 2015년 7월에 도입된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방침에도 불구하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소관부처인 복지부는 고령친화용품과 관련한 어떠한 표준도 관리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본 부분에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입법영향을 살펴보기 보다는 고령친화용품 관련 KS표준 및 단체표준 현황을 통해, 고령친화용품이 표준화 사업으로부터 오랜 기간 소외되어 왔음을 확인하고 시급히 다수의 표준을 제・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데에 목적을 두고자 함

### (1) KS 표준

□ 고령친화용품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에 의한 표준화 사업은 고사하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표준 제・개정과정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조 또는 판매되는 고령친화용품 722개 품목 중 극히 일부만이 표준을 갖추고 있음[17]

○ 문구・사무용품에 해당하는 리포트 용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리포트 용지

16) KS표준이 없는 품목에 대해 협회, 단체 및 조합이 제・개정하는 표준

17) 오민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토론문」,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2016 입법영향분석 상반기 세미나 발표집(2016. 7. 4)

는 197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표준과 규격이 제·개정되어 왔으나, 노인을 위한 고령친화용품 전체의 KS 표준은 [표 11]과 같이 1981년 이후 21년 동안 표준이 마련되지 않다가 2002년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표준의 제정이 이루어지는 등 소외되어 있음

○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출한 고령친화용품 관련 KS표준 현황 135건 중 장애인용 표준이나 장례서비스,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표준 등을 제외한 64건을 제·개정 연도별로 구분하면 [표 11]과 같음

**[표 11] 고령친화용품 관련 KS 표준 제·개정 현황**

(단위: 개)

| KS 표준 | 제정 | 개정 |
|---|---|---|
| 1976 | 1 | |
| 1981 | 1 | |
| 2002 | 10 | |
| 2003 | 14 | |
| 2004 | | |
| 2005 | 4 | |
| 2006 | 2 | |
| 2007 | 4 | |
| 2008 | | |
| 2009 | | |
| 2010 | | 5 |
| 2011 | 28 | 8 |
| 2012 | | 14 |
| 2013 | | 8 |
| 2014 | | |
| 2015 | | 1 |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제출자료(2016. 3)

○ 2002년 이후 마련된 KS 표준들도 수동침대, 양팔조작 보행기, 다족 지팡이, 요실금 기저귀, 욕창예방 매트리스, 욕창예방 시트쿠션, 수동 및 전동 휠체어 등 일부 용품에 불과하고, 다양한 용품들이 두루 표준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님

- 예컨대, 요실금 기저귀 관련 표준이 14건, 휠체어 관련 표준이 25건 등 한 두 개 품목에 관련 표준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상황임

○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2011년 한 해 동안 28건이 한꺼번에 제정된 것이 매우 이례적인데, 그나마 요실금 기저귀 및 휠체어 관련 표준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현행과 같이 표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고령친화용품은 고령 소비자의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국제표준 규격에 맞추어 국내표준을 제정한다 해도, 우리나라 노인의 체형이나 욕구에 맞지 않는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 적용될 수 있는 표준화 활동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18)]

○ 다만, 향후 고령친화용품 관련 KS표준의 제・개정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산업표준화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는 이상,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성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18) 오민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토론문」,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2016 입법영향분석 상반기 세미나 발표집(2016. 7. 4).

### (2) 단체표준

□ KS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용품들을 대상으로,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주축이 되어 단체표준을 제・개정하고 있는데,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들의 표준화 활동이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19] 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 현재 마련된 고령친화용품 관련 단체표준은 2016년 1월 기준 28건이고, 밑줄 친 10개 항목은 복지용구임

| | |
|---|---|
| 1. 안마의자 | 15. 목욕리프트 |
| 2. 고령자용신발 | 16. 이동형욕조 |
| 3. 족욕기 | 17. 목욕의자 |
| 4. 자동배변처리기 | 18. 간이변기 |
| 5. 출입감지기 | 19. 이동변기 |
| 6. 위치추적기 | 20. 자세변환용구 |
| 7. 휠체어테이블 | 21. 안전손잡이 |
| 8. 성인용기저귀 | 22. 고령자용 에이프런 |
| 9. 세발기 | 23. 바닥부착용 논슬립 |
| 10. 가정용 미끄럼방지용품 | 24. 욕창예방 방석-비공기패드형 |
| 11. 단차해소기 | 25. 고령자용 식사용구(숟가락 등) |
| 12. 가정용 배회감지기-매트형 | 26. 고령자용 식사용구(식판) |
| 13. 고령자용 의류-요양복 | 27. 높낮이 조절 세면기 |
| 14. 고령자용 운동보조기구-비전동패달 | 28. 고령자용 침대 매트리스 |

19)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단체표준의 제정·등록·운용·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단체표준의 제·개정 시점과 현황을 살펴보면 [표 12]와 같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후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체 단체표준의 절반인 14건이 제정된 후, 매년 평균 2건 정도씩 늘어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초기 단체표준 제정실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는데, 그 이유는 용품 제조업체들의 제품을 복지용구로 등록시켜 활용하려면 단체표준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단체표준의 개정작업도 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복지용구 고시개정 작업과 맞물려 진행되어 왔기 때문임

**[표 12] 고령친화용품 관련 단체표준 제·개정 현황**

(단위: 건)

| 구분 | 제정 | 개정 |
|---|---|---|
| 2007 | 6 | |
| 2008 | 3 | |
| 2009 | 5 | |
| 2010 | 1 | |
| 2011 | 1 | |
| 2012 | 3 | 1 |
| 2013 | | 5 |
| 2014 | 2 | 3 |
| 2015 | 3 | 4 |
| 2016 | 2 | 6 |

자료: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설명자료(2016.05)

□ 간헐적으로 한 두 개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KS 표준과 달리 단체표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그 속도는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

○ 왜냐하면 고령친화용품 제조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관련 R&D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협회 등 외부에 의뢰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마련하기도 어려워 적극성을 띄지 않기 때문임[20]

○ 성공적으로 신규 단체표준을 제정하는 데에 1건 당 1,500만 원~2,000만 원이 필요한데, 만약 표준제정에 실패할 경우 관련 비용만 허비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데다, 표준화 절차에 짧게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품 제조비용을 단시일에 회수해야하는 중소업체들로서는 표준화 의뢰가 어려운 구조임

○ 표준화 선진국일수록 민간부문(단체 등)이 표준화를 주도하면서 기술진보와 표준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상향식 표준화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고, 민간주도 방식이 기술혁신 속도의 가속화에 보다 더 잘 대응하게 됨으로써 표준화 제정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시장에는 외국제품을 비롯한 상당수의 고령친화용품이 이미 유통 중에 있지만, KS표준과 단체표준을 갖춘 일부 품목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은 사용상의 안전을 담보할 기준이 없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함[21]

○ 현 상황에서「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은 고령친화용품의 표준화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소비자를 위한 보호막의 역할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20)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관계자 면담(2016. 4. 7)
21) 부산 고령친화지원센터 관계자 제출자료(2016. 6. 12)

### (3) 소결

□ 본래 고령친화용품의 표준화는 고령친화용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절차로 마련된 것이며, 제품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가 그 입법 목적임

○ 그러나 고령친화용품 중 표준화와 관련하여, KS 표준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용품(772개)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64건 수준이며, 민간에서 주도한 단체표준도 아직 28건인 상황임

○ KS표준과 단체표준 모두 산업부 소관법률인「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개정되고 있지만, 워낙 오랜 기간 소외된 분야인데다,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단체표준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어,「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9년 여 동안, 이 법 제8조에 따른 표준화 사업은 노인 소비자 보호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을 것임

□ 결론적으로 품질의 향상과 호환성의 확보를 위한 표준화 사업의 범 부처 추진이라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의 입법 목적은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다. 고령친화산업 발전에의 영향

### (1) 고령친화용품산업 관련 현황

□ 지난 9년 간 용품 제조업체와 관련한 다양한 현황을 통해 해당 분야 산업의 발전 여부를 판단해 보고,「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함

□ 2007년 산자부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고령친화용품업체가 영세하고, 기술력이 부족하여 국산화가 저조한 수준이고, 소량·다품종 생산 특성으로 기업의 채산성 확보가 어려워 기술개발투자 저조 및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음[22]

□ 만약 고령친화용품업체의 현재 상황을 2007년도의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간접적으로나마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우선, 고령친화용품의 시장규모를 보면 2015년 기준 1조 8,770억 원이고, 2020년에 이르면 2조를 넘어설 것으로 추계한 연구결과도 있으나,[23]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정확한 추계는 아닌 것으로 보임

- 고령친화용품업체는 채산성을 고려하여 용품만을 제조하지 않고, 의료기기 등도 함께 제조하고 있으나, 업체매출에서 용품매출만을 따로 떼어내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업체의 총매출을 근거로 시장규모 등을 추계하다보니 용품산업의 규모가 중복계산되어 과잉으로 추계되는 경향이 다분히 많음[24]

□ 그런데 고령친화용품은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력규모나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소수의 중기업과 대다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산업구성임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이전인 2005년 기준, 고령친화용품산업 제조

22) 산자부 산업융합정책과, 「고령친화제품 단기실용화 기술개발 추진계획」(2007)
2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 시장동향」, 『고령친화산업 REPORT』, 2015. 앞의 [표 2] 참고.
24)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전문가 간담회,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운영실태와 법적 개선과제」(2016. 3. 28.)

업체 수는 177개소, 종사인력은 3,378명으로 업체 당 종사인력 수가 평균 20명 미만인 상황이었음[25)]

○ 노인장기요양제도 3개년 시범사업으로 복지용구 수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2006년에는 업체수가 376개, 2007년에는 415개로 늘어났으며, 2008년에는 866개로 급격히 증가함

- 이 시기 해당 산업체 종사인력의 평균 증가율이 45.9%를 기록했으며, 2007년에는 6,403명이었던 종사인력이 2008년에는 12,424명으로 전년대비 94%가 증가하는 급성장을 이루었음

○ 그러나 급성장세가 꺾이면서, 2014년에 이르면 제조업체가 594개소로 줄었으며, 종사인력은 11,642명 수준으로 감소함([표 13] 참고)

[표 13] 고령친화용품 제조업체의 인력규모별 현황

| 구분 | 업체 현황 | | 종사인력 수 | | |
|---|---|---|---|---|---|
| | 업체 개소수 | 비중(%) | 총 인력수 | 비중(%) | 업체당 평균 |
| 고령친화용품제조업체 | 594 | 100.0 | 11,642.5 | 100.0 | 19.6 |
| 3명 미만 | 138 | 23.3 | 233.4 | 2.0 | 1.7 |
| 3~5명 | 163 | 27.4 | 631.9 | 5.4 | 3.9 |
| 6~10명 | 124 | 20.9 | 983.0 | 8.4 | 7.9 |
| 11~20명 | 87 | 14.7 | 1,230.4 | 10.6 | 14.1 |
| 21~30명 | 31 | 5.3 | 819.7 | 7.0 | 26.2 |
| 31~50명 | 23 | 3.9 | 943.3 | 8.1 | 40.8 |
| 51~100명 | 12 | 2.1 | 861.9 | 7.4 | 69.5 |
| 101명 이상 | 15 | 2.4 | 5,939.0 | 51.0 | 409 |

주: 2014년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년도 고령친화용품산업 실태조사」, 2015, p. 45.

25) 건양대학교,「고령친화제품 실태조사 및 초기시장육성전략」, 2007.

□ 2005년부터 2014년을 비교하면 분명히 제조업체수와 종사인력은 증가하였으나, 2014년 기준으로 용품업체 중 인력규모 10인 이하인 경우가 425개로 전체 제조업체의 71.6%로 나타났고, 업체 당 평균 종사인력(19.6명)도 2005년과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매출액 기준으로, 5억 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 업체 중 47.6%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 10억 원 미만인 업체 비중이 63.6%로 절대다수인데([표 14] 참고), 그나마도 과대추계된 매출액임을 감안할 때 고령친화용품 업체가 성장해 오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표 14] 고령친화용품 제조업체의 매출액 현황

(매출액 단위: 백만 원)

| 구분 | 업체 현황 | | 고령친화용품 매출액 | | |
|---|---|---|---|---|---|
| | 업체 개소수 | 비중(%) | 총 매출액 | 비중(%) | 업체당 평균 |
| 고령친화용품 매출액 | 594 | 100.0 | 4,179,738 | 100.0 | 7,037 |
| 1억원 미만 | 95 | 16.0 | 3,805 | 0.1 | 40 |
| 1억원~5억원 미만 | 188 | 31.6 | 41,479 | 1.0 | 221 |
| 5억원~10억원 미만 | 95 | 16.0 | 66,767 | 1.6 | 705 |
| 10억원~20억원 미만 | 81 | 13.7 | 110,281 | 2.6 | 1,356 |
| 20억원~50억원 미만 | 67 | 11.4 | 201,619 | 4.8 | 2,990 |
| 50억원~100억원 미만 | 40 | 6.7 | 265,339 | 6.3 | 6,688 |
| 100억원 이상 | 28 | 4.8 | 3,490,448 | 83.5 | 123,648 |

주: 2014년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년도 고령친화용품산업 실태조사」, 2015, p. 50.

### (2) 고령친화용품업체 운영 실태

□ 고령친화산업이 지난 9년 동안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개별 업체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6]에 따르면, 고령친화용품업체의 상당수는 다른 업종을 영위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및 고령친화산업의 미래전망을 예상하고 고령친화용품산업에 진출한 업체들이었음

□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은 다품종 소량 생산된 용품들을 판매하는데 급급한 실정인데, 이를 위해 원가를 최대한 낮추는 전략을 세울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제품의 신규개발 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는데다가, 신규개발 등으로 원가가 오르면 판매가 되지 않는 유통구조로 인해 업체의 운영상황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업계는 ○○○○라는 일본계 유통회사가 꽉 잡고 있습니다. 이런 유통회사에서 중국 OEM 제품을 들여와서 '일본'제품으로 시장에서 팔고 있는데, 우리는 가격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는 유통회사니까, 마진이 많이 남는 물건들만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그 유통업체에 우리 제품을 들여놔야 그나마 물건이 팔리는데 가격경쟁이 안되고...○○○○는 마진을 60% 수준을 원하고,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유통마진은 25% 이고...우리가 개별적으로 소매점에 직접 우리 제품을 넣기가 어려운 것이... 소매점에서는 개별 제조업체랑 직접 계약하지 않고 ○○○○ 같은 큰 유통회사랑 상대하려고 하고, 중간도매업체들만 돈을 버는 구조라서...결국 우리가 중간도매업체에게 우리 물건을 보내려면 원가를 최대한 낮춰서 그들의 유통마진을 높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부산시 소재 S업체 인터뷰)

□ 국내수요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인 복지용구와 노인요양시설에서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형성되어 내수기반이 취약한데, 보험재정 부담을 확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임

26)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10.10.15.),「고령친화용품 제조 중소기업 육성방안」.

○ 고령친화용품은 대체로 복지용구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을 통해 판매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매칭으로 설치한 상설 종합체험관에 전시되거나 용품박람회 및 실버전시회 등을 통해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런데 복지용구는 별도의 광고 및 홍보가 필요 없고 본인부담금도 전체 금액의 15%(저소득층은 7%,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지만, 복지용구 이외의 용품들은 소비자가 용품가격의 전액을 부담하다보니 판매업소 내에서 판매실적도 복지용구에 비해 저조할 수밖에 없음

□ 복지용구 이외의 용품들은 일반 소비재와 마찬가지로 업체가 광고 및 홍보비를 따로 부담해야 하지만, 판매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다보니, 업체들은 복지용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매우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음

○ 복지용구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1,100억 원 수준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에서 복지용구 품목을 17개로 소위 “관리”하고 있어, 기존 복지용구 시장에 신규로 진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임[27)]

□ 민간 업체들은 제조된 용품을 복지용구로 등록하려고 사활을 걸게 되지만, 제조부터 복지용구로 등록하여 판매하는 전체 과정에 최대 2년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살아남는 것 자체가 관건임

○ 2016년 2월의 고시 개정에 따라, 복지용구로 새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용품이 사전에 200개 이상 또는 5천만 원 이상의 판매실적이 있어야 하고, 이는 새로운 기능과 기술을 도입한 신제품의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됨

2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관계자 면담(2016. 1. 14)

> 새로 개발된 제품의 경우, 복지용구로 등록을 하려면 기존의 복지용구와 먼저 판매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미 복지용구로 등록된 기존 제품들은 구매자가 금액의 일부만 부담하지만, 새로 진입하려는 용품들은 전액을 부담해야 하니까...구매자들이 값을 비교해 보다가...구입하지 않거든요. 원가가 비싼 제품일수록 더 그런 거죠. 그래서 복지용구로 등록하기 전에 판매실적을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좋은 제품들은 원가가 올라가는데, 판매실적이 없으니 복지용구 신규품목으로 진입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업체들도 R&D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만든 후 복지용구로 등록이 될지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해야하기 때문이죠. 결국 복지용구로 먼저 등록하여 진입한 몇 개 선발업체만 계속 서바이벌 하는 거고, 복지용구의 질은 개선될 수 없는 거죠. (부산시 소재 S업체 인터뷰 1)

○ 따라서 일부 업체들은 직접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제품을 생산하기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해외 제품 수입방식으로 선회하기도 하는데,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또 다른 악순환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 최근까지 65세 이상인 노인들이 고령친화용품의 구매에 소극적이었다면, 향후 10년 내 노인계층으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들은 학력수준이 높고 다양한 욕구가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복지용구들을 구입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재의 용품수준과 기술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자체 R&D 없이 수입에 의존할 경우 해당 산업의 부실이 명백히 예측되어지기 때문임

### (3) 소결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시행 이전인 2007년과 이후를 비교해 볼 때, 고령친화용품이 소기업에 의해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 산업구조의 경향성은 큰 변화가 없었음

○ 중소제조업체가 당면한 열악한 구조적 상황으로 인해, 고령친화용품의 질을 제고하고 다양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R&D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임

○ 더불어 제품의 성능이 선진국(미국, 유럽, 일본 등)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수출형 제품으로 발전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OEM 방식으로 제작된 수입제품들이 대형 유통업체에 의해 유통되고 있어,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어려움이 있음

○ 그 결과 판로가 제도적으로 확보된 복지용구 분야로 쏠림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이는 고령친화용품 시장을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고령친화용품산업이 진흥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복지부가 주도하는 복지용구 중심의 전략으로는 미흡하며, 제품의 표준화와 기술력 제고를 위한 R&D 사업 및 해외시장 공략 등을 추진할 적극적인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하고, 이는 산업관련 부처의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음

## 4. 사회 · 문화 영향분석: 고령자의 복리

### (1) 복지용구의 대여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품이 고령친화용품이므로, 고령친화용품과 관련한 제도변화가 고령자의 복리의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음

○ 다만, 고령친화용품 표준제정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고령자의 복리가 증진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고령친화용품과 관련하여, 고령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고령친화용품산업의 진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간략히 검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함

□ 2009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85호를 통해 일부 고가의 복지용구(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를 구매 방식에서 대여방식으로 변경함

○ 고시를 개정한 이유는 복지용구의 구입 후,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하고 고령자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는 등의 상황이 종종 발생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된 것임

○ 1인당 160만원 한도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가의 복지용구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은 이용자가 다른 복지용구품목들을 추가로 구매 또는 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령자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요인이 됨

□ 문제는 고령친화용품 제조업체들은 워낙 소규모 업체들이 집약된 형태다 보니 복지용구와 관련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제조업체에 바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발견됨

○ 고령자의 복리를 위한 고시개정은 해당 제품이 판매될 것을 예상하고 제작하였던 소규모 업체들 상당수를 도산하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

○ 또한 대여방식으로 변경된 품목들이 고령친화용품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에 해당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R&D를 수행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대여방식으로의 변경 후 R&D 관련 예산이 상당부분 축소되었다고 함[28)]

○ 고령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고시개정 등의 조치가 고령친화용품 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지거나 제품의 질적 제고로 연결되지 못한 사례로 볼 수 있음

28) 부산테크노파크 관계자 면담자료(2016. 5.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년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사업」, 2015, p. 104.

### (2) 소결

□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해서 산업의 진흥에 중점을 두는가 아니면 제품을 이용하는 고령자의 권익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는 확연히 드러나게 됨

○ ‘산업’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은「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제명에서 보듯이, 이 법률이 산업을 진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고령친화’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은 결국 고령자의 권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임

○ 다만, 고령자의 권익에 방점을 두는 정책이 그 취지와 달리 고령친화용품의 질 저하와 업체의 재정적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면, 결국 고령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는 없을 것임

## 5. 규제영향분석: 우수제품 지정제도

### (1)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관련 현황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에 따라 복지부에서 지정해 온 고령친화우수제품(S마크) 현황을 살펴보면 [표 15]와 같음

○ 우수제품 중 밑줄 친 항목은 복지용구로서, 우수제품의 지정이 복지용구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음을 보여줌

## [표 15] 고령친화우수제품(S마크) 품목 및 품질기준

| 품목명 | | 지정 연도 | 관계법령 | 품질기준 | 발급기관 |
|---|---|---|---|---|---|
| 1 | 수동휠체어 | 2008 | 「의료기기법」 「산업표준화법」 | 의료기기 신고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 | 시험성적서 | 부산테크노파크<br>한국산업기술시험원<br>재활공학연구소 |
| 2 | 욕창예방 매트리스 | 2008 | 「의료기기법」 「산업표준화법」 | 의료기기 허가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 3 | 욕창예방방석 | 2008 | | 시험성적서 | 부산테크노파크<br>한국산업기술시험원<br>재활공학연구소 |
| 4 | 전동침대 | 2008 | 「의료기기법」 「산업표준화법」 | 의료기기신고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 5 | 수동침대 | 2008 | | 시험성적서 | 부산테크노파크<br>한국산업기술시험원<br>재활공학연구소 |
| 6 | 지팡이 | 2008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 시험성적서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br>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br>부산테크노파크 |
| 7 | 보행차 | 2008 | |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br>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 8 | 보행보조차 | 2008 | | | |
| 9 | 이동변기 | 2008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서 |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
| 10 | 간이변기 | 2008 | | | |
| 11 | 안전손잡이 | 2008 | | | |
| 12 | 목욕의자 | 2008 | | | |
| 13 | 자세변환용구 | 2008 | | | |
| 14 | 목욕리프트 | 2008 | | | |
| 15 | 이동욕조 | 2008 | | | |
| 16 | 세발기 | 2009 | | | |
| 17 | 노인용신발 | 2009 | | | |
| 18 | 자동배변 처리기 | 2012 | | | |

| 품목명 | | 지정 연도 | 관계법령 | 품질기준 | 발급기관 |
|---|---|---|---|---|---|
| 19 | 고령자용 기저귀 | 2012 | | | |
| 20 | 배회감지기 | 2013 | | | |
| 21 | 단차해소기 | 2013 | | | |
| 22 | 고령자용 의류(요양복) | 2014 | | | |
| 23 | 가정용 미끄럼 방지용품 | 2014 | | | |
| 24 | 욕창예방방석 (비공기형) | 2015 | | | |
| 25 | 고령자용 에이프런 | 2015 | | | |

주: 기준시점은 2016년 6월 말 기준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년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사업」, 2015, p.137.

□ 복지용구 17개 품목 중 15개 품목이 우수제품에 포함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지부가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복지용구를 제조하려는 업체의 우수제품 지정 참여를 유도해 왔기 때문임

○ 우수제품 S마크를 획득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복지용구 제품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 관련 시험검사비를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복지용구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하였던 것임[29)]

□ 이미 표준화 등의 절차를 거친 제품인 만큼, 사실상 S마크는 품질인증보다는 제조업체의 재정건전성과 신용도 등을 고려한 일종의 보증서인데, S마크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판매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여 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상황이라고 함[30)]

29)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관계자 면담(2016. 4. 7)

○ 입법영향분석을 위하여, 우수제품 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판매량과 매출액의 차이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으나, 개별 업체로부터 취합한 관련 자료는 관리되고 있지 않았으며,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는 매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복지용구의 공급실적 정도로 한정되어 있었음([표 16] 참고)

### [표 16] 복지용구의 공급실적

(단위: 개, 천원, %)

| 품목 | 생산량 | | | 매출액 |
|---|---|---|---|---|
| | 국내제조(비율) | 국외수입(비율) | 합계 | |
| 수동휠체어 | 9,189 (78.9) | 2,460 (21.1) | 11,649 | 4,187,076 |
| 욕창예방매트리스 | 6,884 (99.1) | 65 (0.9) | 6,949 | 2,214,573 |
| 욕창예방방석 | 25,890 (94.0) | 1,655 (6.0) | 27,545 | 4,818,205 |
| 전동침대 | 5,564 (100.0) | - | 5,564 | 4,272,410 |
| 수동침대 | 248 (100.0) | - | 248 | 100,358 |
| 지팡이 | 32,033 (66.8) | 15,926 (33.2) | 47,959 | 474,845 |
| 보행차 | 23,457 (78.2) | 6,542 (21.8) | 29,999 | 2,243,477 |
| 보행보조차 | 21,131 (39.0) | 32,991 (61.0) | 54,122 | 3,929,372 |
| 이동변기 | 22,780 (89.8) | 2,587 (10.2) | 25,367 | 4,925,593 |
| 간이변기 | 10,824 (100.0) | - | 10,824 | 101,111 |
| 안전손잡이 | 48,783 (99.4) | 298 (0.6) | 49,081 | 2,761,468 |
| 목욕의자 | 18,590 (66.9) | 9,214 (33.1) | 27,804 | 4,427,133 |
| 자세변환용구 | 60,369 (100.0) | - | 60,369 | 3,012,050 |
| 이동욕조 | 315 (100.0) | - | 315 | 78,906 |
| 단차해소기 | 100 (100.0) | - | 100 | 6,480 |
| 전체 | 286,157 (80.0) | 71,738 (20.0) | 357,895 | 37,453,057 |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년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사업」, 2015, p.152.

30) 전문가간담회 논의(2016. 3. 28)

□ 다만,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제품의 판매량과 직결되지 않고 있음은 관련 업체의 우수제품 신청현황과 복지부의 지정 현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음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표 17] 참고), 2011년부터 신청 및 지정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음

○ 만약 S마크가 판매량과 직결되고 있다면, 제조업체들은 꾸준히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하였을 것이지만, 우수제품 지정 신청은 확연히 줄어들고 있음

**[표 17] 고령친화우수제품 신청 및 지정 현황**

| 구분 | 합계 | | 2008 | | 2009 | | 2010 |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
| | 신청 | 지정 | 신청 | 지정 | 신청 | 지정 | 신청 | 지정 | 신청 | 지정 | 신청 | 지정 | 신청 | 지정 | 신청 | 지정 |
| 수동휠체어 | 76 | 65 | 25 | 17 | 31 | 29 | 18 | 17 | | | | | 2 | 2 | | |
| 욕창예방 매트리스 | 43 | 42 | 14 | 13 | 17 | 17 | 7 | 7 | 1 | 1 | | | 3 | 3 | 1 | 1 |
| 욕창예방 방석 | 44 | 41 | 8 | 5 | 10 | 10 | 7 | 7 | 2 | 2 | | | 4 | 4 | 13 | 13 |
| 전동침대 | 108 | 91 | 18 | 15 | 44 | 42 | 37 | 25 | | | | | 6 | 6 | 3 | 3 |
| 수동침대 | 35 | 31 | 18 | 14 | 13 | 13 | 4 | 4 | | | | | | | | |
| 지팡이 | 148 | 120 | 65 | 45 | 15 | 13 | 40 | 38 | 2 | 2 | 6 | 5 | 12 | 11 | 8 | 6 |
| 보행차 | 78 | 66 | 37 | 35 | 16 | 11 | 11 | 9 | 6 | 4 | 2 | 2 | 2 | 2 | 4 | 3 |
| 보행보조차 | 168 | 137 | 83 | 66 | 39 | 34 | 14 | 12 | 6 | 5 | 7 | 6 | 14 | 10 | 5 | 4 |
| 이동변기 | 58 | 48 | 19 | 15 | 19 | 16 | 8 | 6 | | | 1 | 1 | 6 | 6 | 5 | 4 |
| 간이변기 | 28 | 25 | 17 | 14 | 3 | 3 | 3 | 3 | | | 3 | 3 | | | 2 | 2 |
| 안전손잡이 | 97 | 94 | 26 | 24 | 20 | 19 | 19 | 19 | 1 | 1 | 17 | 17 | 2 | 2 | 12 | 12 |
| 목욕의자 | 60 | 53 | 14 | 12 | 16 | 15 | 17 | 14 | | | 1 | 1 | 4 | 4 | 8 | 7 |
| 자세변환용구 | 152 | 85 | 23 | 19 | 96 | 36 | 20 | 17 | | | | | 9 | 9 | 4 | 4 |
| 목욕리프트 | 4 | 3 | 2 | 1 | 2 | 2 | | | | | | | | | | |

| 구분 | 합계 | | 2008 | | 2009 | | 2010 |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
| | 신청 | 지정 | 신청 | 지정 | 신청 | 지정 | 신청 | 지정 | 신청 | 지정 | 신청 | 지정 | 신청 | 지정 | 신청 | 지정 |
| 이동욕조 | 14 | 7 | 6 | 1 | 6 | 4 | 1 | 1 | | | | | 1 | 1 | | |
| 세발기 | 1 | 1 | | | | | | | 1 | 1 | | | | | | |
| 노인용신발 | 1 | | | | | | | | | | 1 | | | | | |
| 배회감지기 | 3 | 2 | | | | | | | | | | | 1 | | 2 | 2 |
| 단차해소기 | 4 | 3 | | | | | | | | | | | 2 | 2 | 2 | 1 |
| 고령자기저귀 | 4 | 4 | | | | | | | | | | | | | 4 | 4 |
| 가정용미끄럼방지용품 | 6 | 3 | | | | | | | | | | | | | 6 | 3 |
| 전체 | 1,132 | 921 | 375 | 296 | 347 | 264 | 206 | 179 | 19 | 16 | 38 | 35 | 68 | 62 | 79 | 69 |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년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사업」, 2015, p.142-143을 재구성

### (2) 이중규제 논란

□ 2011년부터 지정신청자가 급감하게 된 이유는 2010년 지경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제도를 불필요한 규제로 분류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강제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되도록 조치하였기 때문임

○ 표준화 절차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이 된 상황에서, 우수제품인증을 위한 절차를 추가로 밟도록 하는 것은 그 절차가 완료되는 기간(평균 1년 이상) 이후에야 복지용구 등으로 등록할 수 있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판매수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업체의 재정난을 가중시켜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도입과 시장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임[31)]

31) 부산 고령친화용품업체 관계자 면담(2016.05.12.)

□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시험성적과 단체표준 인증 등 표준화절차[32]를 통과한 제품들이나「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대상으로,「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고령친화용품의 호환성 확보와 판매량 증가라는 편익은 없고, 과도한 절차와 시간 소요에 따른 부대비용만 들어가는 이중규제로 인식된 것임

○ 복지부는 우수제품 지정업무의 실적 관리를 위하여 복지용구 제조업체에게 건보공단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시험검사비를 지원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임

○ 우수제품 지정을 위해 사전단계로 수행되어야 하는 표준화 사업예산의 일부를 지원해 왔던 복지부도 2016년부터는 협회 등에 해당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진입하려는 복지용구의 판매 또는 대여가격을 기존제품 수준으로 유지하고, 복지용구 품목을 17개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

32) (1) KS표준의 절차: ① 전문가 또는 자체조사연구, ② 국가기술표준원에 초안작성 제출,③ 제정예고(60일)을 통한 이해관계인 이견청취, ④ 산업표준심의회 심의(표준회의, 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⑤ KS고시 및 한국표준협회 출판, ⑥ 해외 및 국내 표준 보급
(2) 단체표준의 절차: ① 사전심사 신청, ②사전심사위원회 개최, ③ 단체표준인증 신청, ④ 심사원 및 심사일정 통보, ⑤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의뢰, ⑥ 인증심의회 개최, ⑦ 인증서 교부

○ 문제는 용품시장이 복지용구를 중심으로 과열되면서, 용품시장의 성장을 이끌던 복지용구가 사실상 다른 고령친화용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된 것임[33)]

### (3) 소결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제도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거나 또는 매출액을 가시적으로 늘려 생산자의 편익을 증가시키지 못하면서, 복지용구 제조업체에게 옥상옥의 절차와 규제로 여겨지고 있음

○ S마크를 박스나 제품에 붙이더라도 제품의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S마크를 취득하려면 업체 입장에서는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고, 수천만 원이 소요되는 시험응시료를 내고 의뢰를 했다가 지정을 받지 못하면 관련 비용만 허비하게 되어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임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는 소관부처인 복지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많은 반발을 사며 이중규제로 비판받고 있는 만큼 폐지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33)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관계자 면담(2016.1.14)

## 6. 부패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7. 기타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Ⅴ. 결론

## 1. 요약

□ 이 보고서는 2006년 12월 제정되어, 2007년 6월부터 시행된「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와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의 입법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음

○ 해당 조항에 명시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역할, 사업의 내용, 추진성과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입법의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음

○ 전반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된 후 지난 9년간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에 끼친 긍정적 영향은 감지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이 필요한 단계인 것으로 보임

□ 법체계적 분석: 불명확한 적용범위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실상 표준화사업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범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음

- 왜냐하면 제8조에「산업표준화법」제2조에 따른 품목 및 서비스(즉 모든 광공업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한편, 고령친화제품의 정의가 애매하게 “노인을 위한” 제품으로 정의되다보니, 고령친화제품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인 고령친화산업의 정의와 범주도 명확히 파악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고령친화산업의 규모추계가 과장되고, 고령친화산업의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상황임

□ 정치·행정 영향분석: 중앙 행정기관에의 영향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8개 부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복지부와 산업부를 제외하고, 다른 부처는 이 법률에 근거를 둔 전담부서나 인력이 따로 정해져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도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

○ 산업부는「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복지부 소관법률인 관계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으나, 현장조사를 통해 만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현재와 같이 복지부에서 복지용구 중심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산업부 중심으로 개편하여 제대로 고령친화산업을 진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

○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복지용구 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친화산업을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법률의 소관부처임에도 8개 범부처 업무추진의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관심사가 반영되어 산자부 중심으로 고령친화산업 관련 업무가 추진되었지만,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정부 차원의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면서 소관부처인 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복지용구 관리와 겸직하여 우수제품 지정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 경제·산업 영향분석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근거한 예산은 복지부의 경우 지정된 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전부였으며, 산업부의 경우는 관련 예산 없이 센터를 지정하는 업무만 수행 중인 것으로 드러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명시된 예산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 예산은 1년에 2천만 원~1억 원 수준인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부처별 분절된 업무수행으로 인해 실제 관련 예산은 이보다 많을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함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로는 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성남시가 있으며, 이들 지자체는 고령친화제품을 전시・홍보・판매할 목적으로 홍보체험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인프라 사업을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지자체의 경우도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자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중앙정부의 국고매칭을 통한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음

○ 소비자보호

- 제품의 표준화는 호환성 확보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고령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조치이지만,「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8조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의 고령친화용품들은 KS표준 및 단체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마련되어 있는 경우라 해도「산업표준화법」등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확인함
- 수입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고령친화용품이 시장에 유통 중에 있지만, 고령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면 아직 미흡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음
- 현행과 같이 복지용구 중심의 사업운영 방식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R&D

투자를 통한 민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용품의 질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표준이 마련되지 못한 용품의 표준을 시급히 제정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산업을 진흥시키는 방식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소비자보호가 될 수 있을 것임

○ 고령친화산업 발전에의 영향

- 고령친화용품 업체들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상황이었음
- 특히 업체들은 시장판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복지용구 중심으로 생산품을 제조하려는 인센티브를 강하게 갖고 있어, 전체 용품시장을 왜곡시키는 현상이 나타났음
- 실제로 주요 용품시장의 판매실적을 보더라도 복지용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함
- 유통구조로 인해 제품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용품을 제조하다보니, R&D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제품의 수준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함

□ 사회・문화영향분석: 고령자 복리

○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해서 산업의 진흥에 중점을 두는가 아니면 제품을 이용하는 고령자의 권익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가 드러남

- ‘산업’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이 산업을 진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령친화’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은 결국 고령자의 권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봄

- 다만, 고령자의 권익의 강조가 자칫 고령친화용품의 질 저하와 업체의 재정적 위기를 초래할 경우, 결국 고령자의 권익도 증진될 수 없음

□ 규제영향분석: 우수제품 지정제도

○ 이미 시험성적서 발급과 심의를 거친 표준화 절차를 밟은 제품들을 다시 우수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해 또 다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어 산업부에서 지나친 규제임을 명시한 바 있음

○ 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복지용구의 질 관리라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지속해 오고 있으나, 2016년부터는 위탁기관에 더 이상 표준화 예산지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이 제도의 명맥이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함

○ 우수제품지정제도의 취지는 제품의 질 관리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겠으나, 기업체들이 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도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었고, 기업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제품 R&D사업이 축소되는 문제 또한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됨[34)]

## 2. 입법과제 제언

□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볼 때,「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은 지난 9년 여간 제대로 입법의 영향이 미치지 못한 상황이며, 다음과 같은 입법과제가 도출됨

34) (재)부산테크노파크 관계자 면담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년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사업」, 2015, p. 104.

○ 우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조항(제4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은 현재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들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8개 부처에서 함께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정부조직법」의 부처별 업무분장 규정방식을 준용하여, 개별 부처의 고령친화산업 관련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각 부처가 기본계획을 설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컨트롤 타워를 확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될 것임
- 특히 범부처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안은 이 법률 제4조의 발전계획을 부처별로 별도로 만들도록 하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허브조직을 마련하는 것임
- 다만, 현재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대해 보여준 관심의 수준이 매우 미약하고, 개별부처 소관 법률로 전락한 상황에서, 법률개정을 통해 범부처 합동 사업으로의 운영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둘째, 제8조의 표준화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산업부 소관법률인「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표준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8조를 전문개정하여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사업은「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 셋째, 현행과 같이 복지부가 고령친화산업 진흥정책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관리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보다는, 고령친화산업이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산업부로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를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성도 있음

○ 넷째,「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12조는 편익보다 비용이 큰 이중규제로 현장에서 비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할 실익이 크지 않은 관계로 폐

지하거나, 전문개정을 통해 우수제품 인증제도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6조에 따른 우수제품 인증제도를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 다섯째,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제8조와 제12조 이외에도, 사실상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이 실효성을 확보한 조항은 발견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현행과 같은 진흥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참 고 문 헌


김수봉 외,「고령친화용품 소비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2005.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II)」, 2006.

대한민국정부,「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5.

대한민국정부,「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완판」, 2008.

대한민국정부,「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0.

대한민국정부,「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201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201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201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201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201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201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년도 고령친화용품산업 실태조사」, 2015.

산자부 보도자료(2005. 9. 15),「고령친화 생활체험 서비스 실시,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10.10.15),「고령친화용품 제조 중소기업 육성 방안」.

지경부 보도자료(2008.9.22),「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발표」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년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사업」, 2015.

# 부 록

## [표 1] 제1차 기본계획 고령친화산업 관련 실적(1)

| 사업명 | 성과지표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고령친화 산업육성 기반구축 | 고령친화우수사업자 (복지용구사업소) 지정 운영기준 마련 | | | | | 운영기준(안) 마련 |
| |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10개 과제 지원 | | | | | 13개과제 지원 |
| | 성과지표 및 실적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정 | 연구용역실시 (1건) | 개선사항 1건 추진 | |
| | 목표달성률(%)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br>130.0 |
| 고령친화 산업통합 DB 개발 및 구축 (복지부) | 고령친화산업 및 복지용구 정보제공 건수 | | | | DB에 522개 제품등재 | 방문자 257,728건 |
| | 목표달성률(%) | | | | 116.0 | 106.5 |
| 고령친화 산업통합 DB 개발 및 구축 (지경부) | 산업정보 DB구축수 | | | | 2,198건 | |
| | 목표달성률(%) | | | | 73.3 | |
| 우수제품 품질표시제 내실화 | 제품·서비스표준 확대수 | 4 | 13 | 14 | 9 | 16 |
| | 우수품목 지정확대 | | | | 2개 품목 | |
| | 우수제품 지정확대 | | | 296건 | 297개 제품 | |
| | 성과지표 및 실적 | 제도(안)마련 | 같은 법 시행령 제정 | | | |
| | 목표달성률(%) | 100.0 | 200.0 | 1,184.0 | 66.7<br>77.3 | 100.0 |
| 우수서비스 사용자지정 도입 | 성과지표 및 실적 | | | | 시범운영사업 20개소지정 | 기준개선,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 | 목표달성률(%) | | | | 100.0 | 100.0 |
| 고령친화 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 성과지표 및 실적 | | 체험관 2개소 선정 및 구축추진 | 체험관 2개소 개소 | 체험관 구축 및 운영 | 참관객수 8만명 |
| | 목표달성률(%) | | 100.0 | 100.0 | 100.0 | 133.3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2011, p. 182, 184, 275를 재구성함.

## [표 2] 제1차 기본계획 고령친화산업 관련 실적(2)

| 사업명 | 성과지표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복지용구 우수제품 개발 등 R&D | 기술개발지원 과제수 | | | | 13개 | 13개 |
| | 목표달성률(%) | | | | 118.2 | 100.0 |
| 지원센터 기능강화 (복지부) | 고령친화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 | | | | 구성 |
| | 고령친화발전 연구위원회 개최 | | | | | 2회 |
| | 정책포럼 운영 | | | | | 4회 |
| | 우수품목 확대 | | | | 2개 | |
| | 우수제품 확대 | | | | 297개 | |
| | DB 등재제품 확대 | | | | 550개 | |
| | 목표달성률(%) | | | | 66.7<br>77.3<br>122.2 | 100.0<br>50.0<br>200.0 |
| 지원센터 기능강화 (지경부) | 홍보체험관 제품전시(종) | | | | 590 | 590 |
| | 산업체지원(건) | | | | 97 | 98 |
| | 유통지원 이벤트 개최(회) | | | | 20 | 6 |
| | 박람회 참관지원(개사) | | | | 93 | 62 |
| | 시험인증 장비구축(종) | | | | 10 | 3 |
| | 고령친화용품 실습교육(회) | | | | 6 | 15 |
| | 산업 및 단체표준제정(회) | | | | 10 | 7 |
| | 자립화·역할재정립 전략수립 | | | | 1건 | |
| | 고령친화산업관련 DB구축(건) | 830 | 1,915 | 4,774 | | |

| 사업명 | 성과지표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 목표달성률(%) | 103.8 | 239.4 | 367.2 | 178.8<br>121.3<br>333.3<br>93.0<br>100.0<br>150.0<br>100.0<br>100.0 | 147.5<br>108.9<br>100.0<br>62.0<br>100.0<br>750.0<br>100.0 |
| 우수제품 전시기회 확대 | 고령친화 우수제품 홍보(개) | | | | 245 | 703 |
| |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 방문자 | | | | 13.1만명 | 26.5만명 |
| | 고령친화산업관련업계 참여기업 | 103 | 85 | 106 | 102 | |
| | 목표달성률(%) | 121.2 | 100.0 | 106.0 | 116.7<br>181.9<br>102.0 | 206.8<br>115.2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2011, p. 189.

## [표 3] 제2차 기본계획 고령친화산업 관련 실적

| 사업명 | 성과지표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
| | | 실적 | 달성률 | 실적 | 달성률 | 실적 | 달성률 | 실적 | 달성률 |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운영 | 사용성 평가 실시 | 3개 | 100.0 | 3개 | 100.0 | 3개 | 100.0 | 3개 | 100.0 |
| 고령친화산업 통계생산 구축 및 R&D | 고령친화제품 실태조사실시 | | | 1회 | 100.0 | 2회 | 200.0 | 1회 | 100.0 |
| | 고령친화제품 개발연구기관 지원 | | | 1개 | 100.0 | 1개 | 100.0 | 1개 | 100.0 |
|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산업부) | 표준 제·개정 종수 | 31종 | 206.7 | 16종 | 133.3 | 19종 | 118.8 | 19종 | 118.8 |
|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회의참석, 국제문건검토, 전문위원회 등 | 61건 | 277.3 | 57건 | 259.1 | 54건 | 108.0 | 62건 | 112.7 |
| 우수제품 지정표시 제도확대 | 우수제품(서비스)확대 품목 기준마련 | 2개 | 100.0 | 2개 | 100.0 | 2건 | 100.0 | 2건 | 100.0 |
|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평가 | 제도운영추진('11) 지정제도 개선('13~) | 2회 | 100.0 |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안) | 1건 100.0 | 1회 | 100.0 | | |
| | 서비스질 향상 교육 | 1회 | 100.0 | | | 1회 | 100.0 | | |
|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발굴 |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발굴('11) 서비스가이드라인 개발('13) | 5건 | 100.0 | | | 2건 | 100.0 | | |
|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개선 | 제도개선(고시 등 제정)('11) 고령친화산업육성 인센티브 개발('13) | 1건 | 100.0 | | | 3건 | 150.0 | | |
| 산업박람회 홍보관운영 내실화 | 박람회 운영 지원 | 773개 | 100.0 | 2건 | 100.0 | 3건 | 100.0 | 4건 | 100.0 |
| | 유공자(기업)발굴 및 표창 | 31.2만명 | 107.6 | 8건 | 133.3 | 11건 | 137.5 | 12건 | 109.1 |
| 지역사회 밀착형 전시·체험관 운영 | 체험관 설치·운영 | 3개소 | 150.0 | 2개소 | 100.0 | 5개소 | 100.0 | 8개소 | 160.0 |
| 고령친화제품·서비스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 | 참관객 수 | 58,051명 | 80.6 | 54,323명 | 75.4 | 152,448명 | 254.1 | 166,558명 | 166.6 |
| 고령친화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 수출정보 DB 구축건수 | 108건 | 108.0 | 100건 | 100.0 | 100건 | 100.0 | 100건 | 100.0 |
| 고령친화 해외시장 개척지원 | 해외진출협의회 운영 | 4회 | 133.3 | 3회 | 100.0 | 4회 | 133.3 | 4회 | 100.0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각 연도.

# 입법영향분석보고서 발간 일람

| 호 수 | 제 목 | 발간일 | 집필진 |
|---|---|---|---|
| 제9호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중 공인전자주소제도의 입법영향분석 | 2016. 09. 09. | 심우민 |
| 제8호 |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중지제도 관련 입법영향분석 | 2016. 06. 30. | 최지현 |
| 제7호 |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 2016. 06. 24. | 김진수 |
| 제6호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전자어음의 이용)의 입법영향분석 | 2015. 12. 31. | 황현영 |
| 제5호 | 「말산업 육성법」의 입법영향분석 | 2015. 12. 30. | 유제범 |
| 제4호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13조(국제개발협력정책 추진체계)의 입법영향분석 | 2015. 12. 29. | 유웅조 |
| 제3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의 입법영향분석 | 2015. 11. 30. | 원시연<br>장경석 |
| 제2호 | 「근로기준법」 제33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입법영향분석 | 2015. 11. 30. | 한인상 |
| 제1호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의 입법영향분석 | 2015. 11. 30. | 김 준 |

#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10호


| | |
|---|---|
| 발 간 일 | 2016년 10월 10일 |
| 발 행 | 임성호 |
| 편 집 |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
| 발 행 처 | 국회입법조사처<b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br>TEL 02 · 788 · 4710 |
| 인 쇄 | 경성문화사 (TEL 02 · 786 · 2999) |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SN 2465-9355
발간등록번호 31-9735042-0001402-14



Ⓒ 국회입법조사처, 2016

입법영향분석보고서는

국회에서 제 · 개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주요 법률의 입법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로

수시 발간되고 있습니다.

www.nars.go.kr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우)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02)788-4510(代)
www.nars.go.kr

ISSN 2465-9355